

Deloitte Newsletter



2012 년 12 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공인회계사회 조사.. 회계선진화 이끈 기업

파이낸셜 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자산규모 5000 억원 이상의 대기업군과 5000 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코스닥 상장사 등 크게 3 개 부류로 나눠 기업의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군 중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기업회계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Tax] 취득세 감면·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령은, 9 억원 이하 주택 현행 2%→1%, 9 억원 초과~12 억원 이하 주택 현행 4%→2%, 12 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3%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 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Tax 판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 두 12347 판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가산세 종류가 150 여건에 달한다는 이유로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해왔습니다. 이런 과세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산세 고지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세행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어, 이 판결이 나온 후 기획재정부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Tax 판례]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 두 6636 판결)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재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미
통상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처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2 두 11011 판결). 그 동안 위 판례의 결론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후속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2008.11.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00년이 아니라는 판결확정이 있었고 2009.9.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바꾼 재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한 후속판단으로서, 과세관청의 부과권 제한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지난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2차 이사회에서 인천의 송도가 기금 사무국의
유치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GCF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금의 조달 및 집행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가 가져올 경제적, 외교적 측면의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치되는 최대 규모의 독립 국제기구로 사무국 직원들로 인한 소비지출, GCF 자체의 소비,
유관기관의 소비, 지역의 고용유발 효과 등과 관련 회의들의 개최로 인한 소비지출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소비 진작 효과, 지역고용 창출 및 부동산 임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송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장기적으로는 국제 기구의 영속적인 활동으로 인한 회의, 관광, 숙박 등 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로 MICE 산업 전체의 규모 확대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의 이슈 선점 효과로 관련 국제 기구의 후속 유치에 대한 기대와 관련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개도국에 대한 기금의 투자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공동투자 참여,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대기업들 비주력 사업 정리

내년 국내 및 세계 경제상황이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사 합병과 정리를 통한 비주력 사업의 적자 부문 및 중복사업 감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80 개인 계열사 가운데 4 곳을, LG 는 64 개 계열사 가운데 최대 7 개 사업과 계열사를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력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포스코, 국내외 유통사 일괄매각 추진

포스코가 계열사 소유의 국내외 유통사 3 곳을 일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은 포스코건설 소유의 베트남의 주상복합건물 '다이아몬드 플라자'와 부산 주상복합쇼핑몰 '센트럴스퀘어',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의 창원 '대우백화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괄 매각이 무산될 경우에는 하나씩 쪼개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계열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STX, 메탈·중공업 합병 "성장·재무건전성 잡는다"

STX 그룹은 사업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인 STX 메탈이 STX 중공업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은 1:0.34 정도로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사명은 전체 사업영역 포괄성을 고려해 STX 중공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두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기존 강점을 가진 플랜트 분야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2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